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4 선고 2020가합5160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유병일, 하동규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 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1. 4. 1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229,394원 및 그 중 263,194,164원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20. 3. 19.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2020. 4. 10.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2015. 5. 29.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5. 6. 1. C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피고회사의 사업자폐업신고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C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63,194,164원을 지급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63,194,164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대지급금 잔액 35,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재판장판사이원석

판사최석진

판사선민정